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 일시: 2019. 4. 17.(수), 15:30
2. 장소: 본관 1층 대회의실
3. 참석자

구분	인원	성명	비고
참석인원	11	우정원, 이주희, 임원정, 신하윤, 유제욱, 이민하, 김다연, 남상택, 장남수, 이정화, 송희준	최형석(간사)
불참인원	1	정연화	

4. 안건
   - □ 제1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
   - □ 제2호의안: 2018학년도 결산안 자문의 일
   - □ 제3호의안: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용어 변경 요청의 일

5. 개회선언

가. 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총동창회장 선출에 따른 동문 평의원 변경에 대해 안내하고 보궐평의원으로 위촉된 남상택 총동창회장을 소개하다.

나. 간사는 성원을 확인하고 과반이상 출석하여 성원이 충족되었음을 보고하고 의장은 개회를 선언하다.

다. 이어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배부된 전 회의록 내용에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고하도록 안내하다.

6. 안건심의

가. 심의 및 자문사항

□ 제1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

(1) 의장은 제1호의안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 심의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본 안건에 대해 간사에게 설명을 요청하여 간사는 학칙 및 대학원 학칙 개정안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다.

(2)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자연계열인 의과학과의 학위명과 동일하게 의학계열인

의학과의 학위명에 보건학석사 및 보건학박사를 추가하고자 변경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임원정 평의원은 의과대학의 의과학과와 의학과 지원자의 차이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고 의학과에도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등 보건학 석·박사 학위가 필요한 분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다.

(3) 장남수 평의원은 보건학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교내 다른 학과와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인지를 확인하고, 의장은 의과대학의 교과과정에 따라 수여하는 학위이므로 다른 학과와의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4) 의장은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해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답하여 개정안 심의에 통과한 것으로 확인하고 심의를 종료하다.

(5) 이주희 평의원은 학칙 개정안에 대해 제50조와 제51조 용어의 혼용에 대해 지적하며, 제50조의 '일정한 시험'과 제51조의 '논문제출', '졸업종합시험' 등 복잡하고 불분명하게 규정에서 표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다. 이어 학칙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표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6) 신하윤 평의원은 학칙 개정안의 개정 취지가 졸업 필수요건을 학과의 자율로 정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이 개정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

(7) 유제욱 평의원은 제51조에서 총장의 권한을 대학장에게 위임하였는데, 더 포괄적인 규정인 제50조에서 이를 학과로 위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문의하다.

(8) 신하윤 평의원은 고등교육법의 졸업요건 완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인지 문의하고, 이민하 평의원은 현행을 반영하여 학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9) 의장은 학칙 개정의 취지가 현행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최소한의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현행 규정에 대한 평의원들의 의문사항은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다. 이어 본 회의에서 논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므로 교무처에서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요청하다.

(교무처 참석자: 교무처장)

(10) 교무처장은 학칙 개정 취지 및 학칙 제50조는 졸업에 대한 원칙적인 조문, 제51조는 결정 주체를 총장에서 대학장으로 자율화 한 것임을 설명하다.

(11) 신하윤 평의원은 학과 자율로 졸업 필수요건 부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문의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 규정 개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이주희 평의원은 제50조 조항이 졸업 필수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학과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졸업 필수요건을 부과하지 않는 학과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하다.

(12) 신하윤 평의원은 졸업논문 제도 변경은 규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중요한 문제로 각 대학에 졸업논문 제도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는 진행하였으나 결정에 대한 절차는 안내받지 못한 상황으로 절차상의 문제도 있음을 지적하다.

(13) 송희준 평의원은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개정에 따른 것인지 묻고, 의장은 현재의 학칙 개정안으로 대학평의원회 심의는 어려우며 고등교육법 상 졸업 요건에 대한 지침 확인, 졸업 필수요건 부과 여부에 대한 이화 공동체의 합의가 진행된 이후에 학칙 개정안을 차기 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하다.

(14) 이민하 평의원은 학생들에게도 졸업요건은 중요한 사항이므로 학생 의견도 수렴해 주기를 요청하고, 유제욱 평의원은 졸업요건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15) 교무처장은 졸업논문 제도 변경에 대해 교수와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취지에 맞도록 규정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답하다.

□ 제2호의안: 2018학년도 결산안 자문의 일

(1) 의장은 제2호의안 2018학년도 결산안 자문의 일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의료원 참석자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의료원 참석자: 조도상 의료원 전략기획본부장, 김한진 이대목동병원 사무부장, 남상호 이대목동병원 관리팀장, 김지홍 이대서울병원 사무부장, 이후정 이대서울병원 관리팀장)

(2) 이대목동병원 관리팀장과 이대서울병원 관리팀장은 2018년 이대목동병원과 이대서울 병원 결산보고를 진행하고 이후 자문을 진행하다.

(3) 이주희 평의원은 관리운영비의 외주용역비 증가 및 이대서울병원의 간호 외주용역에 대해 문의하고, 목동병원 관리팀장은 외주용역비는 외주검사비와 용역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외주용역비 증가는 추가 외주에 의한 증가는 아니고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용역비 인상이 반영된 것임을 설명하다. 인건비 감소는 용역비 증가와 관련한 것은 아니고 2018년 2월 한달동안 목동병원의 인력이 서울병원으로의 전출에 따른 것이라고 답하다. 이어 서울병원 관리팀장은 간호 외주용역은 직접 간호를 하지 않는 인력-간호사를 지원하는 보조적인 업무, 간호기능원-에 대한 외주임을 설명하고 타 대학병원에서도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태라고 답하다.

(4) 장남수 평의원은 새 병원 개원에 따른 양 병원 운영 현황이 사전 예측한 시뮬레이션과 비교하여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묻고, 전략기획본부장은 목동병원은 서울병원 개원으로 인한 감소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상황이며 서울병원은 2개월 운영한 상황으로 양 병원 합산 의료수익은 예상대비 88% 정도 달성하였다고 설명하다. 이어 전략기획본부장은 3월은 92~93%, 4월은 예상대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하고, 양 병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운영 초기이긴 하나 긍정적으로 보고있다고 답하다.

(5) 의장은 수치적인 부분을 추가로 묻고, 목동병원 관리팀장은 2018년은 NICU사태, 상급종합병원 지위상실 등으로 수익감소가 예측된 상황으로 420억 정도 수익감소가

있었으나 교직원 급여유예, 법인 대여 등을 통한 자구책으로 자금 유동성을 유지하였으며, 2019년 목동병원은 예상치보다 5~10% 초과 수익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서울병원은 330병상 계획 대비 164병상으로 시작하여 예상보다 수익은 미흡한 상황이나 전공의가 없는 신규 병원이므로 3개월 정도 운영 이후에 수익 측정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하다.

(6) 남상택 평의원은 전문의의 피로 누적 등 문제가 없을지 우려를 표하고, 전략기획본부장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전문의가 꼭 필요한 분과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다. 현재 병상 규모로는 현재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나, 병상이 늘어날 경우에는 추가 인력 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전공의의 일부 역할을 전문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다.

(7) 이주희 평의원은 외주용역은 병원 특성상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교수 인력 충원 및 활용 등 의료원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다.

(8)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의 결산 자문을 위해 결산에 대한 전문(foreword) 등을 다음 회의부터는 준비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본 회의에서는 교원 충원 및 이주희 평의원이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의료원 상황을 공유하는 것을 제안하다. 전략기획본부장은 다음 예산 및 결산 보고부터는 자료를 보완하겠다고 답하고, 양 병원 체계로 운영을 위해서 전문의가 50명 추가되었으며 처음 계획은 전임교원을 20~30명 추가하고자 하였으나 학교 및 의료원 사정상 전임교원 충원은 하지 못하여 서울병원은 128명 교원 중 48명이 전임교원이며 그 외는 비전임, 펠로우로 구성되어 있다고 답하다. 전공의가 없는 신규 병원의 특성상 서울병원은 펠로우 지원자를 구하기 어려워 비전임교원인 촉탁의를 충원하였다고 설명하고, 새 병원 운영을 위해 희생하고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보람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 중임을 답하다.

(9)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으신지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어 의료원의 2018학년도 결산안 자문을 마치고 학교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기로 하다.

(기획처 참석자: 유세경 기획처장, 이혜성 기획처부처장(예산), 최혜련 예산팀장, 왕혜정 회계팀장)

(10) 기획처장이 2018학년도 결산안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이후 자문을 진행하다.

(11) 이주희 평의원은 결산안 자문을 위해서는 3년간의 결산 추이자료 및 수입부(등록금, 전입금, 기타 교육수입 등)와 지출부(보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을 금액이 아닌 비율(%)로 표시한 자료를 준비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기획처장은 3년간 추이 및 비율(%)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겠다고 답하다.

(12) 의장은 보완 자료를 등록금심의위원회 전에 준비하여 열람 가능하도록 요청하고, 예산팀장은 대학평의원회를 담당하는 기획팀을 통해 서면으로 전달하겠다고 답하다.

(13) 송희준 평의원은 결산자료는 회계 규칙에 따른 양식이므로 현행 자료를 유지하되 설명자료를 보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예산팀장은 본 자료는 공시 결산양식을

차용하였으므로 추이에 대한 3년간 자료를 별첨으로 보완하여 준비하겠다고 답하다.

(14) 송희준 평의원은 기금이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학교의 대책에 대해 묻고, 기획처장은 특정목적기금은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기금 적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하다. 등록금과 별도로 학교의 수입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학교 및 법인에서 모색중임을 설명하다.

(15) 이정화 평의원은 등록금 환불액 10원억에 대해 묻고, 예산팀장은 등록금 환불은 휴학 시기에 따라 발생하며 연간 약 10억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답하다.

(16) 이주희 평의원은 기부금이 타 대학 대비하여 적은 상황으로 학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하다.

(17) 유제욱 평의원은 기금을 인출해서 사용하는 분야에 대해 문의하고, 기획처장은 산학협력관, 의과대학 건축으로 인해 건축기금 비중이 컸고 연구기금, 장학기금, 특정목적기금의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있으며 학교 경상비 등으로 기금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고 답하다.

(18) 송희준 평의원은 경상비 적자가 상당하다는 소문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원인 및 추세에 대해 묻고, 예산팀장은 건축비, 연구지원, 장학금 지급, 목적 사업비 항목으로 기금이 인출되었으며 목적사업비는 학교의 교육수준을 유지하고 발전을 위해 투자되어야 하는 항목에 사용하고 있음을 답하다.

(19) 이주희 평의원은 학교가 체계적으로 수입과 지출을 검토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신하윤 평의원은 특수목적기금으로 259억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년도별 추이가 필요하다고 말하다. 이에 기획처장은 특수목적기금 259억원 중 60억원은 단과대학에 배분되어 사용되었고, 145억원은 우수교원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며 발전계획과 연관된 금액은 10억~30억원 정도임을 설명하다.

(20) 의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예결산 자문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예산 대비 결산 추이 자료 및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원칙 등의 추가 자료를 향후 공식화하여 주기를 요청하고, 예결산 자료에 대해 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사전 검토 소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안을 제안하다.

(21) 송희준, 유제욱, 임원정, 장남수, 이민하, 이주희 평의원은 예결산 자문을 위한 추가 자료의 필요성은 전반적으로 동의하나 사전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검토소견서 첨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다.

(22) 기획처장은 학교의 회계감사는 별도로 철저히 진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대학평의원회에서 실질적인 예결산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답하다.

(23) 의장은 평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사전 소위원회 구성 제안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감사보고서 열람 및 예결산 보완 자료 제공을 요청하다.

(24) 의장은 평의원들에게 추가 의견이 있는지 묻고 더 이상 의견이 없어 2018학년도 결산안에 대한 자문을 종료하다.

나. 논의사항

□ 제3호의안: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용어 변경 요청의 일

(1) 의장은 제3호의안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 용어 변경 요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학평의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 설명하다.

(2) 이정화 평의원은 이화는 동창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답하고, 간사는 관련 용어를 변경할 경우 절차에 대해 추가로 설명하다.

(3) 의장은 용어 변경에 대해 총동창회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요청하고, 교수평의원 당연직 위촉 등 위원 추천 및 위촉방법 변경에 대해 차기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므로 차기 회의에서 규정 개정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로 하다.

7. 폐회선언

의장은 안건 심의 및 자문 종료를 알리고 폐회 선언하다.

2019년 4월 17일

의 장 우 정 원 우정원